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2.)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화 승 호]

# 목 차

1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3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5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6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7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62

# 〔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
- 나. 용어의 뜻은(안 제2조)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담당부서
- 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 충격흡수용 표면재(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 보수)사항
-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수목제거 사항
-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설치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행위제한(안 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
  -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정차행위
  -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행위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 마.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안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하여야한다
-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사. 안전감시망 구축(안 제7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 감시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아. 업무의 분담(안 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자.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9조)

- 군수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차. 표창(안 제10조)

-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대한 용어의 뜻을,

- **안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군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8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4조[행위의 제한]에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등 6개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 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안 제8조[업무의 분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게한다.  
그 밖에 안전점검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안전총괄과)에서 실시한다
  - **안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에서**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표창]에서**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군수 및 관리주체의 행위금지 사항을 규정하여 순찰 및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는 안전의무를 위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지정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결과 미달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1.8.31.] [법률 제10731호, 2011.5.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 권한 등 대부분의 실질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12.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검사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72호, 2015.6.30., 일부개정]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삭제 <2013.11.29.>

[별표 2] <개정 2014.11.19.>

**어린이놀이시설**(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별표 6] <개정 2014.11.19.>**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연결 상태
- 나. 어린이놀이기구의 노후(老朽) 정도
- 다. 어린이놀이기구의 변형 상태
- 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청결 상태
- 마.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가. 양호 :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나. 주의 :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다. 보수 :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기구가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 사항
1. 설치자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2. 관리주체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라.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사고 발생 현황

#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
-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정보보호 도모

## 3. 주요골자

- 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안 제9조)
  -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마다 수립,
- 나. 지역환경기준 설정 조항 삭제(안 제1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설정기준 설정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
- 다. 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조항 삭제(안 제14조)
  -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11조 제1항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삭제

라. 지역환경평가 조항 삭제(안 제15조)

-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제1항 도지사는 도 및 시·군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삭제

마.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근거 구체적 명시(안 제17조)

- 군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바. 환경백서 조항 삭제(안 제26조)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9조의 환경보전계획수립내용과 중복되는 제26조 환경백서 삭제

사. 보고 조항 삭제(안 제27조)

- 매년 주요환경보전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중 군의회 주례보고 등을 하고 있어 중복되어 현실에 맞게 삭제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

- 이라 함은 ⇒ 이란, 기타 ⇒ 그 밖의,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56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25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9. ~ 9.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기업이나 군민의 생활정보 보호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서**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기한인 10년마다 수립,
- **안 제13조[지역환경기준 설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설정기준 설정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항 삭제

- **안 제14조[지역 배출허용기준 설정]에서** 환경기본조례 제11조제1항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항 삭제
  - **안 제15조[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 제1항 도지사는 도 및 시·군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항 삭제
  - **안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서]**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 연구 기술개발,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재정지원 등 근거 구체적 명시
  - **안 제26조[환경백서]에서**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9조의 환경보전계획 수립내용과 중복되는 제26조 환경백서 조항을 삭제
  - **안 제27조[보고]에서** 매년 주요환경보전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중 군의회 주례보고 등을 하고 있어 중복되어 현실에 맞게 삭제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751호, 2013.4.5.,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

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11.27., 일부개정]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3. 주요골자

- 가.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3조제2항제3호)
  - 환경부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 따라 별표를 추가하여 심의대상 규모를 명문화하였음.
- 나.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3조제4항)
  - 환경부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중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또는 유역환경청  
의 환경관리국장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군수에서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561호)」  
II. 심의대상, VII.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완화함(안 별표)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9. ~ 9.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 제고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3조제2항제3호[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부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에 따라 별표를 추가하여 심의대상 규모를 명문화하였음.

- **안 제13조제4항[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부 예규 제561호(2015.8.31 일부개정)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지침』 중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또는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리국장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군수에서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 따라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규정을 현실화 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561호)

### II. 심의대상

#### 1.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

#### □ 대상사업

○ 보전지역 주변의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 포함할 대상(권장사항)

○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가 아래 제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로 규정할 대상사업 권고기준(안)▶

○ 아래 제시된 ① 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②, ③, ④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연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된다.

① 형질변경 면적 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만 규모로서 <표 II-6>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사업. 형질변경 면적은 단위사업의 일정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하는 사업면적의 합계를 나타낸 것은 아님

사업계획 면적 구 분	2,000㎡이상	5,000㎡이상	10,000㎡이상	20,000㎡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 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에 한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②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보전지역 및 그 주변에서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되는 건축물

③ 구조물 기준

- 보전지역 및 그 주변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m 이상의 수직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다만, 전력공급시설, 군사시설 등 국가적으로 필수시설인 공공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에 자연경관협의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길이 3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길이 500m 이상의 도로·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m 이상)

④ 자연입지 기준

- 경사 25% 이상에서 높이 5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함)

〈표 II-3〉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 부터의 거리

구 분		경계로 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 ※ 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호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거리기준을 300m로 함

## VII.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 1. 관련 근거

○ 법 제28조 및 제2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2. 구성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또는 조경, 도시계획, 건축, 환경, 농림, 산림자원,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함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만, 자연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 경관 심의의 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취면적 7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또는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리국장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별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형질변경 사업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당 지역은 (1)의 형질변경 기준만 충족하여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심의 범위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의 표 II-3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계획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 준	내 용
가.	▶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나.	▶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다.	▶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라.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마	▶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6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16조제2호·제17조제1호)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17. ~ 10. 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6조제2항[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
  - **안 제7조제1항[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활동 (계약의 자유)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환경부령 제610호, 2015.7.29., 일부개정]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② ~ ④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5.7.29.>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div>	

사업장 규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식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	--------------

⑧ 발생억제계획	
----------	--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등록규제 개선과제(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38호(2014.12.03.))

연번	조 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유 형	관련부서
1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녹색환경과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행정 및 재정지원 개정(안 제19조)
  - 군수는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0조)

- 조례명칭 변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21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11. ~ 10. 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에서** 군수는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각종 행사에 경비의 일부 또는 자전거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 **안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 조례명칭 변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따라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나. 목적(안 제1조)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다. 용어의 뜻 순화함(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농업보조금 ⇒ 농어업보조금, 농업 ⇒ 농어업, 공익발전 ⇒ 농업발전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인법인

라. 계획의 수립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안 제4조)

- 군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6,228백만원(2016년도 예산 확보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 제명 변경으로**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어업 보조금 지원조례』

- **안제1조 [목적]에서**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안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용어의 뜻 순환)에서**  
농업보조금 ⇒ 농어업보조금, 농업 ⇒ 농어업, 공익발전 ⇒ 농업발전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인법인

- **안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서** 군수는 다음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음

- 따라서,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함을 목적으로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 및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56호, 2015.6.22., 일부개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

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관광, 농어촌 체험, 농어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45호, 2015.2.3., 일부개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4호, 2015.2.3., 일부개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4.22.]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 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3.11.]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50호, 2013.8.13., 전부개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15.7.20.] [법률 제13408호, 2015.7.20.,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시행 2008.3.22.] [법률 제8758호, 2007.12.21., 제정]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53호, 2014.6.11., 타법개정]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 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개정이유

-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 3. 주요골자

- 가. 정의(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 명칭 변경
- 나.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위원회구성 시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적용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안 제28조제1항제3호)

- 거창군 쇼핑몰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조항 신설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안 제28조제3항)

- 거창푸드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마. 위탁운영(안 제29조제7항)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바. 지원사업(안 제29조의2)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농산물 품질관리사 운영 지원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사. 위탁의 취소(안 제30조제3항)

- 군수는 수탁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 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 제4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80,000천원(2016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 안 제2조제6호[정의]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법령 명칭 변경
- **안 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 적용
- **안 제28조제1항제3회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에서** 거창군 쇼핑몰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조항 신설
- **안 제28조제3항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에서** 거창군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안 제29조제7항위탁운영에서**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안 제29조의2지원사업에서**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농산물 품질관리사 운영 지원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 따라서,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53호, 2014.6.11., 타법개정]

제2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어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수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 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3.] [법률 제13361호, 2015.6.22., 제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생략)

□ 「민법」 [시행 2015.7.1.] [법률 제13124호, 2015.2.3., 타법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 9. (생략)

부칙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2. 제정이유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조 ~ 제4조)
- 나.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실비변상(안 제5조 ~ 제8조)
- 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용(안 제9조 ~ 제15조)
  -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 준수사항
- 라. 운영위탁(안 제16조)
- 마.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 ~ 제1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130백만원(2016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4. ~ 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5조)

## 5. 검토의견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센터 위치에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둠

- **안 제3조용어 정의에서** 농업인등 사용자 가공시설 농산물 제품 용어 뜻 설명

- **안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에서**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지원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함

- **안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에서**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식품가공담당)을 둔다.

- **안 제6조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공센터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 위탁자 선정과 해지,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 **안 제7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안 제8조실비변상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9조관리·운영에서**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 하며, 또한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 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안 제11조사용 제한에서** 군수는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 위반 관계 법령 등의 규정 위반 가공센터의 생산용량 초과로 농산물가공품 생산이 불가능 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안 제12조사용료에서**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가공물량, 공공요금, 농업인등

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안 제13조사용료의 면제에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에서**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가공시설의 고장·수리·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안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에서** 사용지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하고,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안 제16조운영위탁에서**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 제17조준용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따라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 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5.7.20.]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전문개정 2009.4.24.]

##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